



[보고] 전문법관 확대 시범실시 시행방안

2021. 9. 8.

법원행정처

1. 검토 배경

▣ 제14차 사법행정자문회의(2021. 6. 9.) 자문의견

〈제14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과요지 中 ‘전문법관 확대 방안’〉

- ▣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특정 분야에서 법관이 해당 분야의 재판을 현재보다 장기간 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 시범실시 분야와 실시 방식 등 세부 시행방안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에서 추가로 검토하여 2021년 9월 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 ▣ 위와 같은 제14차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의견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 구체적인 실시 계획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고함

2. 검토 방향

-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가 심층적 논의를 거쳐 연구·검토의 결론으로 도출한 뒤 제14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시범실시 계획을 검토하되, 제14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 결과 중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언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이나 보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함

3. 구체적인 시범실시 계획

가. 실시 분야

-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 결과 및 제14차 사법행정자문회의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시범실시 분야에 대한 검토 실시

● [참고]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도입 분야	전문법원 소속		일반법원 소속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의료 전문법관			9인	2인
노동 전문법관			6인	5인
건설 전문법관			6인	5인
국제거래 전문법관			5인	6인
해사 전문법관			5인	6인
특허 전문법관	6인	5인	4인	7인
회생 전문법관	6인	5인	3인	8인
행정 전문법관	6인	5인	1인	10인

■ 시범실시 분야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대내외적으로 높은 전문화의 요청, 적정 사건 수의 확보, 선정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 검토 결과 ⇨ 의료, 건설 분야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함

● 시범실시 대상 전문분야를 복수로 지정하여 향후 시범실시 결과에 대하여 상호 비교 및 대조가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비록 시범실시라고 할지라도 개개 법관의 인사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그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범실시 분야를 2개 정도로 함이 적절하다고 보임

● ①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의 대부분(9인 찬성)이 실시 분야로 적합하다고 한 ‘의료 분야’ 및 ②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 6인(과반수)이 찬성한 분야 중 대내외적으로 전문지식의 필요성이 비교적 높다고 인정되고 선정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적은 ‘건설 분야’를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함이 상당함

● 제14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의료와 건설 이외에 노동 및 형사 분야에서 전문법관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① 노동 분야의 경우 현재 연구·검토 중인 노동법원 설치 논의와 함께 검토하면서 추후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 전문법원 소속 전문법관의 선발 문제와 통일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최초 시범 실시 분야에서는 보류하는 것이 적절함

⇒ ② 형사 분야의 경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법관 및 변호사 그룹 모두에서 그 도입을 우려하는 의견이 다수로 도출된 점, 형사 재판은 일반 재판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재판이어서 형사 전문법관 도입에 관하여는 보다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추후 계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제도의 명칭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 결과 및 제14차 사법행정자문회의 논의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는 ‘전문법관’이라는 명칭으로 검토를 실시하였는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4차 회의에서 ‘전담법관’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추가 검토 의견이 있었음

■ 현재 ‘전담법관’ 및 ‘전문법관’ 제도가 이미 실시 중에 있음

- **전담법관** ⇒ 2013년부터 실시 중

- 근거

<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2(전담법관) ① 재직기간 중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임된 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 법관임기 중 특정 사무분담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법원 외부에서 신규로 임용**하는 제도로써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에 도입
- 전문성의 측면보다는 상당한 경력이 있는 법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민사 중액, 민사 소액 등의 재판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둠 ⇨ “사물관할”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같은 사물관할 내에 있는 재판의 분야(내용)를 분류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님(이러한 점에서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전문분야 재판을 담당하기 위한 ‘협의의 전문법관’ 과 구별됨)

- [참고] 대한민국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 - 법관임용 안내 - 전담법관

전담법관	
전담법관 제도	
의의	재직기간 중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
도입 배경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경력자 임용을 목적으로 2013년 도입
법적 근거	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2
대상	법조경력 1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임용
인사상 특례	재직기간 중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고(도입 초기에는 민사소액 분야로 한정하였지만, 2015년 일반 민사단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함
기대효과	원숙한 법조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판을 담당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기대

●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 ⇨ 2005년부터 실시 중**

- 2005년 정기인사 시부터 실시되고 있는 유일한 전문법관으로서 현직 법관 가운데 선발되어 일반적인 순환근무 패턴과 달리 가정법원에서 비교적 장기간 가사소년 재판을 담당함
- 법률이나 대법원 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대법원장의 전보인사권 행사를 통하여 제도를 운용하는 특징이 있음
- 2005년 이후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 선발 현황은 아래와 같음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선발 인원	7	4	2	2	3	6	5	4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선발 인원	4	6	7	8	6	7	8	6



- 2021년 현재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의 수는 41명임

● **전담법관과 전문법관 비교**

	전담법관		전문법관
도입취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판을 담당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	≠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정 전문분야 사건에 관하여 전문성 있는 법관이 재판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함
분야	특정한 재판 절차를 전담함으로써 재판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분야 예시) 소액사건 전담법관, 중액사건 전담법관		법 외의 전문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실체적 영역에 관한 분야 예시)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
선정 시점 및 절차	임용 공고부터 구별되어 있고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임용		법관 근무 중 신청을 받아 보임
근무기간	법관 임기 중 계속		법관 임기 중 일정기간
근무법원	동일 법원 원칙		타 법원 전보가능

▣ 검토 ⇨ ‘의료사건 전문법관’, ‘건설사건 전문법관’ 이 적절함

- 전담법관은 ‘특정한 재판 절차’ 를 전담하여 재판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고, 전문법관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판 분야’ 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과 취지 및 분야가 다름
- 현재 ‘전담법관’ 이라는 용어는 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2에 근거를 둔 특정 제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전담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하는 법관으로서 시범실시를 논의하는 전문법관과는 개념상 차이가 있음
- 나아가 이미 가사소년사건에 대하여 ‘전문법관’ 이라는 명칭으로 2005년



부터 약 16년에 걸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번에 비로소 ‘전문법관’이라는 명칭을 새로 사용하는 것도 아님

- 법관들도 대체로 ‘전담법관’은 소액 사건 또는 중액 사건을 전담하는 법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전담법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음
- 또한 전문성이 있는 법관에 의한 재판에 관하여 종래 강화상으로도 주로 이를 ‘전문법관’이라고 지칭하여 온 점 등까지 고려할 때 ‘전문법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다. 실시 시기, 보임 기간 및 선정 규모

▣ 실시 시기 ⇨ 2022년 정기인사 시에 일부 우선 실시함이 적절함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 결과는 ‘2022년 정기인사 시 내지 2023년 정기인사 시’에 우선적으로 시범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음
- 시범실시의 취지를 고려하여 2022년 정기인사 시에는 일부 법원(아래에서 상세히 검토하듯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장 적절)에서 우선 실시하고, 2022년 중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2023년 정기인사 시에 추가 시범실시할 법원을 선정함이 적절함

▣ 보임 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년이 적절함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4년으로 함이 적절함
 - 의료 및 건설 분야를 담당할 전문법관은 전문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 배치되므로 법관 인사주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시범실시 단계에서부터 지나치게 장기간의 보임 기간을 설정하기보다는 필요 최소한도의 보임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
 - ‘4년’ 보임 기간은 전문법관 제도를 통하여 전문성 있는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정된 법관의 입장에서 해당 기간 동안 재직 법원과 사무분담이 변경되지 않고 그 연속성을 ‘보장’ 한다는 의미에 더하여 해당 기간 동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원에서 해당 사무분담을 연속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의무’의 개념이기도 함

■ **담당 업무 범위 및 일반법관과의 병존 여부** ⇨ 전문법관이라고 하더라도 전문분야 사건 외에 일반 사건도 배당받아 처리함이 적절하고, 전문분야 사건 전체를 전문법관이 모두 다 담당할 것이 아니라 일반법관과 나누어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전문법관은 전문분야 사건 외에 일반 사건도 배당받아 처리하고, 전문분야 사건 전체를 전문법관이 모두 다 담당할 것이 아니라 일반법관과 나누어 처리함이 상당

- 전문법관이 전문분야 사건만 담당할 경우 관견(管見, “Tunnel Vision”)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법관도 전문분야 사건 외에 적정한 비율의 일반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현재 각급 법원의 전문재판부에서도 전문분야 사건 외에 일반 사건을 배당받아 함께 처리하고 있는 것이 통상이므로 전문법관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전문재판부의 배당 방식을 별도로 바꿀 필요는 없음

- 전문분야 사건을 전문법관과 일반법관이 나누어서 담당하는 것이 관견 효과를 방지하면서도 일반법(민·형사 등) 법리와의 상충을 방지하는 데에 적절하므로 전문분야 사건 전체를 전문법관이 모두 담당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은 일반법관이 담당하도록 함이 적절함 ⇨ 현재 각 가정법원에도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과 일반법관이 적절한 비율로 병존하고 있음

- 마찬가지로의 취지에서 전문법관 선정 시에는 부장판사와 비부장판사를 적정한 비율로 모두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합의부의 경우 세 명의 법관 모두를 전문법관으로 구성하기보다는 전문법관과 일반법관이 함께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전문법관이 재판장으로 보임되는 것이 취지에는 더 부합할 수 있으나 해당 법관의 경력 등에 비추어 합의부의 배석판사로도 보임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임.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도 모든 전문법관이 재판장에 보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합의부 배석판사로도 보임되어 있음)

■ **선정 규모** ⇨ 분야별 1년에 2 ~ 4(+ α)명 정도로 예상됨(실제 선정 규모는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하는 법관의 수, 인사패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한 분야에서 선정 규모는 1년에 최대 2명 또는 4명(+ α) 정도의 범위로 예상됨
 - 전문법관 제도가 완성된 후라도 전문법관과 더불어 일반법관이 병존할 필요가 있는바, 전문법관이 해당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전체 법관 수의 50~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효과 방지 등의 차원에서 적절함
 - 참고로, 아래에서 보듯이 전문법관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2020년 기준) 의료 전문재판부 근무 법관 수는 13명(부장판사 5인, 판사 8인, 상세 구성은 아래 라.항 참조)이고, 건설 전문재판부 근무 법관 수는 33명(부장판사 12명, 판사 21명, 상세 구성은 아래 라.항 참조)인바, 4년(보임기간) 동안 선정된 전문법관이 누적된 후에도 해당 전문분야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중 전문법관의 비율이 50~60%를 초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의료의 경우 1년에 2명 내외, 건설의 경우 1년에 4명 내외의 법관이 선정될 수 있다는 의미임(사법정책 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 결과도 유사함)
 - 다만 실제 선정 규모는 지원하는 법관의 수, 해당 법원의 전문재판부 수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라. 대상 법원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 결과**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시하는 방안(10인 찬성) 및 장기근무제도 시행 법원에서 실시하는 방안(6인 찬성)이 적절하다는 것이 연구·검토 결과였음

1) 아래에서 보듯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외의 법원도 선정될 경우 선정 규모가 늘어날 수 있음



▣ 대상 법원 선정 기준

- 시범실시 대상 법원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기준은 ① 해당 전문분야 사건 수(전문분야 사건 수가 적을 경우 전문법관이 충분히 그 역할을 발휘하기 어려움), ② 해당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법관 수(전문법관과 일반법관이 병존해야 하는 것까지 고려할 때 전문법관이 배치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법관 수가 일정 정도에는 이르러야 함) 등임
- 후보가 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장기근무제도 시행 법원²⁾의 의료 및 건설 관련 사건 수, 해당 전문재판부 근무 법관 수는 아래와 같음

- 표 생략

▣ 의료 분야 시범실시 법원 검토(2022년 정기인사 시부터) ⇨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우선 검토함이 적절함(해당 법원과 협업하여 실시 필요)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년 정기인사 시부터)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의료 사건 수 및 의료 전문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관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상세한 수치는 위의 표 참조) 전문법관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선정된 전문법관을 전문재판부에 배치하는 것은 전문법관 확대 시범실시의 당연한 전제이므로 이에 맞게 관련 사무분담 예규를 정비할 예정임. 다만, 전문법관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문재판부와의 배치, 전문분야 사건의 배당 등 해당 법원과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 기타 법원

- 다른 법원은 의료 분야 접수 사건 수가 100건 미만으로서 전문법관을 배치하더라도 전문적인 재판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2) 장기근무 대상 법원 중 사법연감 기준 건설·의료분야 전문재판부 사건처리 현황이 없는 법원은 제외하였음



- 다만, 해당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건설 분야 시범실시 법원 검토(2022년 정기인사 시부터)** ⇨ 2022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우선 검토함이 적절하고 2023년에는 대상 법원 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각 해당 법원과 협업하여 실시 필요)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년 정기인사 시부터)**

- 1년간 건설 분야 접수 사건 수가 약 2,000건 수준이고, 건설 전문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관 수가 30명이 넘는바(상세한 수치는 위의 표 참조) 전문법관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앞서 의료 분야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전문법관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과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 **2023년 정기인사 시 추가 검토 가능 법원:**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등(각 장기근무제도 시행 법원) ⇨ 장기근무 법관과 연계하여 선정하는 것도 일용 가능

- 위 각 법원의 경우 건설 사건 수 및 건설 전문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관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상세한 수치는 위의 표 참조) 일용 전문법관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위 각 법원은 장기근무제도 시행 법원이므로 장기근무를 신청한 법관 중에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함(2021년에 장기근무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중에서도 가능)³⁾

마. 선정 절차

■ **신청에 의하여 선정**

- **신청 시기** ⇨ 법관 정기인사를 위한 인사희망원 제출 직후

3) 장기근무제도의 도입 취지, 장기근무 기간 동안 특정 분야의 재판사무만을 담당할 경우에는 전문법관 제도가 추구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제도의 유기적 조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수 있음



- **신청 대상** ⇨ 법관 최소 근무 경력을 4년으로 하고, 부장판사, 비부장판사 모두 신청 가능하도록 함이 적절함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 결과 역시 법관 최소 근무 경력 4년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음

- 민·형사·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두루 경험하여 기초적인 법리 및 재판진행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인 4년이 필요하다는 취지임

- 현재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도 부장판사 및 배석·단독판사를 두루 선발하고 있으며 법관 재직 연수가 4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 **선정 절차** ⇨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통한 선정을 고려함이 적절함**

-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통한 선정을 고려함이 적절함

- 현재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안건 회부에 따른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보직인사안 연구·검토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의견 제시에 따라 선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통한 선정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안건 회부가 필요함)

- **선발 기준** ⇨ **전문성, 적성, 인사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적절함**

-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 선발 기준(전문성, 적성, 연령, 근무성적, 현소속 법원 근무기간 등 제반사정 고려)과 유사하게 하는 것이 적절함

-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경향교류 등 법관 인사패턴과의 정합성 등도 고려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법관 인사패턴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는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바. 규정 정비 필요성 및 개정안



<p>⑤ <u>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제4항 제1호의 기간 안에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u></p>	<p><u>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 : 해당 기간(본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 2호에 우선하여 적용함)</u></p> <p>⑤ ----- ----- ----<u>제4항 제1호 및 제3호</u>----- ----- ----- -----.</p>
<p>제5조의2(전담법관의 사무분담) 재직기간 중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에 대하여는 위 특정 재판사무 외에 다른 사무를 분담시킬 수 없다.</p> <p><신 설></p>	<p>제5조의2(전담법관 및 전문법관의 사무분담) ① ----- ----- ----- -----.</p> <p>② <u>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은 위 기간 동안 해당 분야 전문 재판부에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u></p>

●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
<p>5. 전문재판부의 구성</p> <p>가. 전문재판부의 설치</p> <p>각급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하 ‘법원의 장’ 이라 한다)은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p>	<p>5. 전문재판부의 구성</p> <p>가. 전문재판부의 설치</p> <p>----- ----- -----</p>



-
- ▣ 2022. 2. 의료, 건설 분야 전문법관 선정 결과 발표(정기인사 발표 시)
 - ▣ 2022. 2. 21. 의료, 건설 분야 전문법관 배치
 - ▣ 2022년 중 건설 분야 추가 시범실시 법원 검토(2023년 정기인사 시 시범실시 대상 법원)